

제1장
일반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 나.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서비스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 다. 투자 기회를 상호 증대하는 것
- 라. 양 당사국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 마.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에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는 것
- 바. 혁신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적절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사. 이 협정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틀을 수립하는 것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한다.

제1.4조 의무의 범위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자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나 당국이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에 의한 이 협정상의 모든 의무 및 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1.5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필리핀의 경우,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 그리고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 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나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모든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준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주해 및 보충규정을 포함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시 발효 중이며 수시로 개정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적 주석에 정의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표기방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 인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법적 실체를 말한다.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을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 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 나. 필리핀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필리핀 헌법상 정의된 필리핀의 국민

원산지 상품이란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 “국가 영역”이라는 용어는 또한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다.

무역원활화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